

공

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 - 068호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7월 25일

방송통신위원회장

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후 납부기한이 경과한 자에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의 사유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 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, 제76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

(대전시 동구 대전로 757, 대전우체국 6층, ☎ 042-347-2105)

4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『국세징수법』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**

5. 가산금 및 증가산금 안내

- 가.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 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『국세징수법』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,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5%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징수, 신용관리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마. 과태료는 공고기한 일로부터 납부기한 내에 은행이나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상호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인터넷 뱅킹 및 금융결제원(www.giro.or.kr)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.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 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납부일 기준 증가산금에 따라 달라집니다.)

(단위:원)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0178180004530006846	최*민	850210-1*****	₩39,366,000	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3번길 6-7 (십정동)
2	0178180004530006901	석*극	530310-1*****	₩21,243,6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 (영등포동 2가)
3	0178180004530006859	송*희	620929-1*****	₩18,219,600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(영등포동 2가)
4	0178180004530001338	이*원	700625-1*****	₩21,243,600	대전광역시 중구 당지로 124번길 41, 205호(유천동)
5	0178180004530006865	황*하	741213-1*****	₩40,986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(성정동)
6	0178180004530001380	방*국	620301-1*****	₩30,348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(성정동)
7	0178180004530001398	고*극	620101-1*****	₩27,540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70 (쌍용동)
8	0178180004530001366	서*진	730202-1*****	₩30,348,0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70 (쌍용동)
9	0178180004530006881	김*철	820826-1*****	₩27,972,000	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병풍1길 35
10	0178180004530001367	강*규	640503-1*****	₩30,348,000	대전 유성구 송림로 19번길 35 (하기동)
11	0178180004530001356	전*식	650711-1*****	₩30,996,000	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232-52 (둔산동)
12	0178180004530001363	조*석	800725-1*****	₩30,348,000	대전 중구 대종로 663-7 (중촌동)
13	0178180004530006862	정*진	640810-1*****	₩26,028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 47 (중리동)
14	0178180004530001372	유*근	671103-1*****	₩30,348,000	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춘당로 94번길 11 (송촌동)
15	0178180004530001378	이*생	720130-1*****	₩30,348,000	대전 동구 홍릉로 33 (가양동)
16	0178180004530006904	고*석	610715-1*****	₩26,892,000	대전광역시 동구 역전4길 32 (정동)
17	0178180004530001397	허*욱	620520-1*****	₩26,028,000	대전광역시 동구 진수길13 (소계동)
18	0178180004530006682	변*영	741117-2*****	₩26,028,000	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319, 317호(월평동, 우림필유)
19	0178180004530006850	박*귀	621028-1*****	₩18,673,200	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33번길 19, 203호 (괴정동, 드림빌)
20	0178180004530006886	정*우	790716-1*****	₩18,208,800	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144번길 42, 201호
21	0178180004530001370	손*섭	671128-1*****	₩16,394,400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70, 309동 301호 (백석동, 주공아파트)
22	0178180004530001408	송*섭	730325-1*****	₩28,188,000	전라남도 목포시 소영길 9 (용당동)

No.	과태료 고지번호	채납자	채 납 자 실명번호	과태료 금액	채납자 주소
23	0178180004530006796	엄*현	550702-1*****	₩21,243,600	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, 304호(초지동, 제일프라자)
24	0178180004530006896	문*섭	721110-1*****	₩26,892,000	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18번길 117-14, A동 102호(우산동, 우산빌라)
25	0178180004530006717	최*서	881208-1*****	₩40,014,000	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290번길 6
26	0178180004530001362	이*순	650630-2*****	₩30,348,000	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0가길 18-2(창신동)
27	0178180004530006857	김*희	560807-2*****	₩16,135,20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57, 607동 804호(행신동, 소만마을)
28	0178180004530006847	신*재	700910-1*****	₩26,676,000	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5길 26-20, 105호(리더스2)